



이 메일은XXX 회원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2019년 10월 08일)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처리 결과 알림

신청번호	1AA-1909-553401
신청일	2019-09-26 15:18:50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XXXX
주민(외국인)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
이메일	XXXXXXXXXX
공개여부	비공유
진행상황 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제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 및 초기점검 대가 산정에 관한 질의
민원내용	1.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 및 초기점검 대가 산정에 관한 질의 2. 내용 1) 정기 및 초기점검의 대가를 산정할 때 현장에 위치하는 시설물별로 정기 및 초기점검의 대가를 산정하는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시설물이 서로 약 1km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시설물의 총합으로 1개 시설물인것처럼 대가를 산정하여 발주기관에서 아래 예제와 같이 발주하였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교량1 (1,000m), 교량2 (500m), 교량3 (1500m)
 가. 정상적인 경우
 a. 교량1의 공사비 * 정기 및 초기 점검요율 = 교량1 정기/초기점검비
 b. 교량2의 공사비 * 정기 및 초기 점검요율 = 교량2 정기/초기점검비
 c. 교량3의 공사비 * 정기 및 초기 점검요율 = 교량3 정기/초기점검비
 안전점검 대가 = a + b + c

나. 실제발주

A. 교량1의 연장 + 교량2의 연장 + 교량3의 연장 = 교량A
 B. 교량A * 정기 및 초기 점검요율 = 교량2 정기/초기점검비
 안전점검 대가 = B

다. 정기 및 초기점검 대가 비교

가의 경우를 2,000원이라 하면 나의 경우로 계산할 경우 1,000원 미만

2) 또한 상기와 같이 시설물의 총합으로 계산된 안전점검비가 일부 교량의 설계변경으로 연장이 길어졌을때 전체 길이의 합이 길어짐에 따라 정기및초기점검 요율이 더 하락하여 산정대가가 계약금액보다 작아지는 경우 안전점검 수행비율은 증가하였음에도 계약금액이 작아진 부분에 대해 감액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물별로 분개하여 설계변경하였을 경우는 산정 대가가 증액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 결과

처리기관 정보

[나의민원으로 가기](#)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담당자	장형석 (044-201-3575)	민원인 신청번호	1AA-1909-553401
접수일	2019-09-27 14:45:1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9-659424
처리에정일	2019-10-08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9-10-08 17:58:20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량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의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교량의 경우에는 3차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초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량별로 3차례에 걸쳐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건설공사에 포함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교량별로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안전점검대가 또한 시설물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대가를 계상하고 정산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44-201-3575 담당 장형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②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 국토교통부 -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 불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2000자 이내)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 해결  ☐ 부분해결  ☐ 미해결 

등록

초기화

-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려면, [나의 이용내역 > 정보관리](#)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 본 메일을 발신전용 메일이므로 회신을 통한 문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은 이용문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전화 (국번없이) 110 / 사이트 관련 이용문의 :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